



성북구



수신자 **내부결재**

(경유)

제목 **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**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11호(2008.04.03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05호(2013.04.0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01호(2013.09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73호(2014.07.24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.

2.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가. 사업개요

- 1) 사업명칭 :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위 치 : 성북구 장위동 25-55번지 일대 (시행면적 : 105,163.90㎡)
- 3) 시 행 자 :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- 4)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
- 5) 건축계획 : 지하3층/지상33층, 15개동, 공동주택(아파트) 1,637세대

및 부대복리시설

나. 주민공람·공고 개요

- 1) 공람기간 : 2015.02.05.~2015.02.25.(21일간)
- 2) 공람장소
 - 가)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2241-2834)
 - 나)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911-7520)
- 3) 공람내용 : 사업시행인가 관계도서
- 4)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
- 5) 공고방법 : 구보 게재 및 조합사무실 게시판 게시

- 붙임 1. 공고문 1부.
 2. 공람의견서 1부.
 3. 공람도서 1부(별도). 끝.

주무관

장수진

뉴타운사업1담당 **강우균**

주거정비과장

정택근

도시환경국장

02/03
김장수

협조자 주무관

김하연

시행 주거정비과-1337 () 접수 ()

우 136-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/ <http://www.seongbuk.go.kr>
전화 02-2241-2834 /전송 / suzyn86@sb.go.kr / 대시민공개